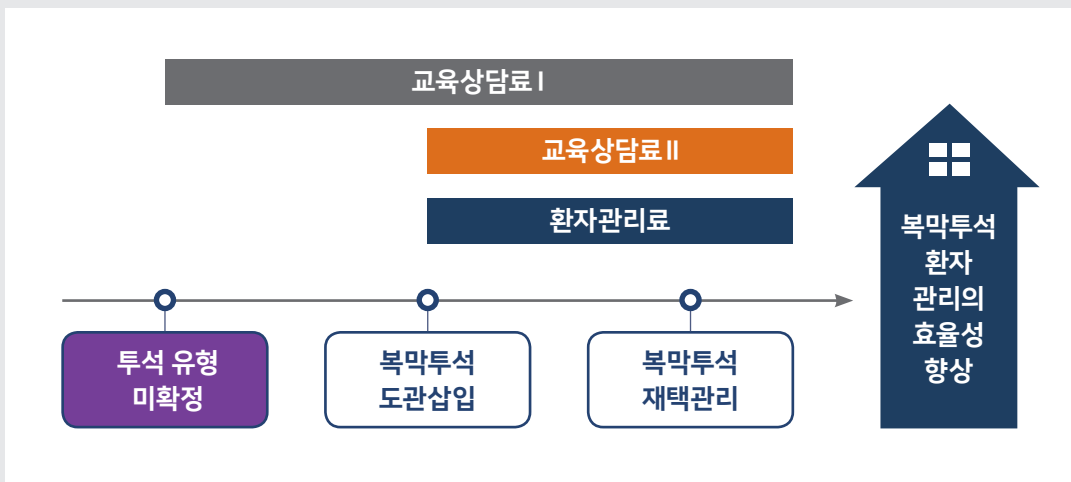




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

개요

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함



사업대상

대상기관 |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

대상자 |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(질병코드:#N18.5)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

교육상담료

내용	기준	수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·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 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상담료I의 경우 투석 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산정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1일 1회 이내로 초기년도 연 4회 이내, 차기 년도부터 연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,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. 교육상담료 I 산정 시 초기년도 연 4회 이내에는 투석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산정횟수 연 2회 이내를 포함한다.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(세부전문의 포함)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한다. 	<p>39,950원* (본인부담 10%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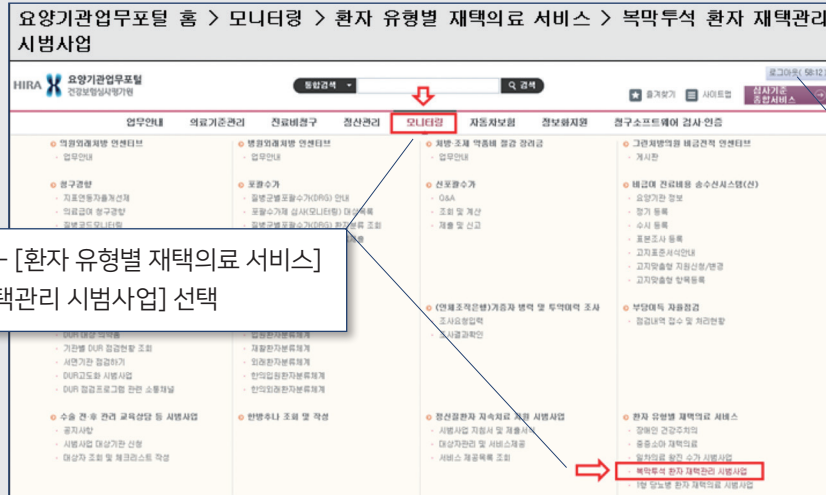
수가코드	적용일자	분류번호	한글명	병원급이상단가
IB510	2021.01.01	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료	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-교육상담료	39,950
IB511	2021.01.01	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료	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-교육상담료-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	39,950

*2021년 기준



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

시스템 접속



나. 상단 [모니터링] - [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] - [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] 선택

가. 요양기관업무포털 (HTTPS://BIZ.HIRA.OR.KR)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

교육상담료 | 점검서

교육상담료 1 점검서 작성

1. 환자 정보

1.1 환자성명: 김관자 | 1.2 주민등록번호: 771231-1-1111111111 | 1.3 등록일자: 2019-12-16

2. 교육 사항

2.1 교육상담 내용

-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
- ① 만성신장병 및 말기신장병에 대한 이해
- ② 신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
- ③ 복막투석에 대한 이해: 관리 및 방법
- ④ 복막투석 관리 간담: 약물(투석액 및 기타 처방 약제) 관련 교육, 투석액 교환, 도관, 수분, 염분, 전해질, 채종 등
- ⑤ 복막투석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

3. 교육자 정보

3.1 교육자직종: 의사

3.2 의사성명: | 3.3 면허번호: | 3.4 전문의 자격번호: |

4. 점검사항

4.1 교육일자: | 4.2 교육시기: 투석유형 미확정 투석유형 확정 (복막투석 도관삽입)

4.3 교육회차: 초기년도 1회 2회 3회 4회 | 차기년도 1회 2회

4.4 교육재공대상: 환자 환자 및 보호자

4.5 교육자료 제공 여부 (리플렛, 슬라이드, 동영상 등): 제공 미 제공

4.6 환자 태도: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

Q&A

Q1 교육상담료의 초기년도, 차기년도 기준은?

환자별 시범사업 참여일*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* [별지 제6호 서식]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(환자용) 작성일

예) 2020년 3월 6일 시범사업 참여한 환자의 경우

구분	초기년도	차기년도
일자	2020.3.6 ~ 2021.3.5.	2021.3.6 ~ 2022.3.5.

Q2 교육상담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분야 전문의(세부 전문의 포함)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하며, 시범기관 소속여부는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]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(변경)신고서, 상, 신고된 의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.

Q3 입원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, 교육상담료II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?

동 수가는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이므로 입원환자에게는 수가산정이 불가합니다.